

(붙임 2)

「국고금 취급절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8. “계좌입금”이란 지출금, 환급금, 과오납금반환금 등의 국고금을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회원조합 등 및 우체국(이하 “계좌입금대상기관”이라 한다)에 개설된 채권자, 납부자 등의 계좌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국고예금계좌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p> <p>9. “계좌입금의뢰자금”이란 본부가 계좌입금 의뢰의 건(파일전송 방식의 계좌입금 의뢰만 해당한다) 또는 계좌입금 결과 입금성공으로 전송받은 건에 대응하여 해당 계좌입금대상기관(회원조합 등의 계좌에 대한 입금 의뢰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 등을 말한다)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나 우체국예탁금계좌에 입금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3조(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생 략) ② 1 ~ 5 (생 략)</p> <p>6.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해당 은행 본점이 국고금 수납자금의 한국은행 지급을 보증할 것</p> <p>7. (생 략)</p>	<p>제2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국고업무 주관부서”란 국고대리점의 설치, 국고대리점의 업무지도, 국고금 사고 보고, 국고전산망의 운영 등 금융기관의 국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p> <p>9. “계좌입금”이란 지출금, 환급금, 과오납금반환금 등의 국고금을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회원조합 등 및 우체국(이하 “계좌입금대상기관”이라 한다)에 개설된 채권자, 납부자 등의 계좌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의 국고예금계좌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p> <p>10. “계좌입금의뢰자금”이란 본부가 계좌입금 의뢰의 건(파일전송 방식의 계좌입금 의뢰만 해당한다) 또는 계좌입금 결과 입금성공으로 전송받은 건에 대응하여 해당 계좌입금대상기관(회원조합 등의 계좌에 대한 입금 의뢰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 등을 말한다)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나 우체국예탁금계좌에 입금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3조(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p> <p>6.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해당 은행 본점이 국고금 수납자금의 한국은행 지급을 보증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p> <p>7. (현행과 같음)</p>	<p>- 절차 용어정의 명확화</p> <p>- “국고업무 주관부서” 신설</p> <p>- 호 번호 내림</p> <p>- 호 번호 내림</p> <p>- 보증조항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제1항의 <u>중앙회 등이</u>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을 지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려면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제4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본부는 <u>중앙회 등이</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을 체결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설 ></p> <p>⑤ 중앙회 등이 규정 제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본부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중앙회 등은</u>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을 지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려는 경우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제4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중앙회 등은</u>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다시 위임하려는 <u>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u> <별지 제2-2호 서식>에 제5항의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본부는 <u>회원조합 등이</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u>중앙회 등과</u>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을 체결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본부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u>중앙회 등과</u>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을 체결한다.</p> <p>1. 은행이 <u>중앙회 등의</u>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2. 은행이 한국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것</p> <p>3. 은행의 본점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것</p> <p>4.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해당 은행 본점이 국고금 수납자금의 한국은행 지급을 보증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p> <p>⑥ <u>중앙회 등이</u> 규정 제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본부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자구수정</p> <p>- 중앙회 등이 은행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 체결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함(서식 추가) 이에 따라 기존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변경</p> <p>- 자구수정</p> <p>- 중앙회 등이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 별도의 계약 요건을 신설</p> <p>- 항 번호 내림</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4조(설치 등) ① (생 략)</p> <p>②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등과 회원조합 등의 국고금수납점 계약은 「국고금수납점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중앙회 등은 본부의 승인(단순 자구수정 등을 제외한다)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p> <p>③ ~ ⑦ (생 략)</p> <p>⑧ 중앙회 등의 산하 회원조합 등이 아닌 금융기관이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제3조제4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등과 회원조합 등의 국고금수납점 계약은 「국고금수납점계약서」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 「국고금수납점계약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다. 중앙회 등은 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단순 자구수정 등을 제외한다)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중앙회 등의 산하 회원조합 등이 아닌 금융기관이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제3조제4항 또는 제5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 중앙회 등과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계약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함(서식 추가) 이에 따라 기존 <별지 제4호 서식>은 <별지 제4-1호 서식>으로 변경</p> <p>- 제3조제5항 신설에 따른 수정</p>
<p>제5조(관할 통할점의 조정) 중앙회 등(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과 그 회원조합 등의 통할점은 본부로 한다.</p>	<p>제5조(관할 통할점의 조정) 중앙회 등(은행은 제외한다)과 회원조합 등의 통할점은 본부로 한다.</p>	<p>-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본부에서 통할하고 있는 현황 반영 및 자구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7조(국고업무 주관부서의 지정·운영) ① 금융기관은 국고업무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고업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정 제5조, 제6조에 따른 국고대리점의 설치·폐지·변경사항 신고 2.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 업무연수 실시 및 본부에 결과 보고 3.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사 실시 및 본부에 결과 보고 4. 규정 제24조에 따른 국고전산망의 유지·관리 및 자체 업무지속성 확보 대책의 마련·유지 5. 상기 업무 이외 해당 금융기관의 국고업무 총괄 <p>③ 금융기관은 국고업무 주관부서 또는 동 부서 내 국고업무 담당직원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 금융기관의 국고업무 주관부서 설치의무, 담당업무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중앙회 등의 자체 업무지도) ① ~ ② (생략)	제7조의2(중앙회 등의 자체 업무지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수정
<p>제31조(수납자금의 결제) ① ~ ③ (생략)</p> <p>④ 본부는 제3항의 자금을 결제시점에 우체국예탁금계좌 또는 <u>결제대행 은행</u>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에서 결제한다.</p>	<p>제31조(수납자금의 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본부는 제3항의 자금을 결제시점에 우체국예탁금계좌 또는 <u>위탁은행</u>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에서 결제한다.</p>	- 자구수정
<p>제84조(전문의 송수신) ① ~ ③ (생략)</p> <p>④ 본부는 제1항에 따라 송신한 전문의 처리결과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이하 “미확인”이라 한다) 해당 기관에 매 3분 간격으로 재처리 의뢰 전문을 송신한다. 이 경우 재처리 전문을 수신한 기관은 최초 수신한 요청내용과 이중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p> <p>⑤ < 신설 ></p>	<p>제84조(전문의 송수신)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송신한 전문의 처리 결과를 본부로부터 수신하지 못한 경우(이하 “미확인”이라 한다) 본부에 매 3분 간격으로 재처리 의뢰 전문을 송신하고, 본부는 재처리 의뢰 전문을 해당 기관에 송신한다. 이 경우 재처리 전문을 수신한 기관은 최초 수신한 요청내용과 이중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p> <p>⑤ 본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제4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매 3분 간격으로 재처리 의뢰 전문을 송신할 수 있다.</p>	<p>- 당행이 송신하던 재처리 의뢰 전문을 기획재정부에서 송신하도록 시스템 운영의 변경사항을 반영</p> <p>- 기획재정부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당행에서 업무를 수행</p>
<p>< 신설 ></p>	<p>제113조(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의 적용)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에는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p>	- 자체 업무지도, 사고 보고 및 제재, 잔액 대조·확인, 수납자금 결제, 조기결제시에는 중앙회 등의 국고금수납점인 은행을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취급
제113조(그 밖의 사항) 이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	제114조(그 밖의 사항) 이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	- 조 번호 내림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증권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별표 6></p> <p style="text-align: center;">실시간 전자이체 송수신 전문</p>	<p>고증권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 칙 <2021. 6. 15.></p> <p><u>이 절차는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u></p> <p><별표 6></p> <p style="text-align: center;">실시간 전자이체 송수신 전문</p>	

현행					개정안					비고	
업무유형	업무내용	요청구분	전문번호	관련기관 ¹⁾	업무유형	업무내용	요청구분	전문번호	관련기관 ¹⁾		
	거래 개시 요청 및 응답	최초요청	X0100	1,2,3		거래 개시 요청 및 응답	최초요청	X0100	1,2,3	- 업무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예비종료 지시 및 응답	최초요청	X0102	1,2,3		예비종료 지시 및 응답	최초요청	X0102	1,2,3		
	집계요구 및 응답	최초요청	X0103	1,2,3		집계요구 및 응답	최초요청	X0103	1,2,3		
	거래종료 지시 및 응답	최초요청	X0104	1,2,3		거래종료 지시 및 응답	최초요청	X0104	1,2,3		
0201	지출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최초요청	X0201	1,2		0201	지출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최초요청	X0201		1,2
0202	관세환급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재처리요청	X0205			0202	관세환급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재처리요청	X0205		
0203	과오납반환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3	과오납반환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4	석유부과금환급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4	석유부과금환급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5	예탁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5	예탁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501	지출금의 수입금 대체 지출	최초요청	X0501	1		0501	지출금의 수입금 대체 지출	최초요청	X0501		1
0502	예탁금의 수입금 대체 지급	재처리요청	X0505			0502	예탁금의 수입금 대체 지급	재처리요청	X0505		
0503	국고금 운용자금의 출납공무원계좌 이체					0503	국고금 운용자금의 출납공무원계좌 이체				
0504	결산상잉여금 처분(수입징수관 또는 출납공무원 계좌)					0504	결산상잉여금 처분(수입징수관 또는 출납공무원 계좌)				
	<신 설>					0505	초과세수에 의한 국제상환				
0601	중앙관서지출관계좌에 자금계획 배정	최초요청	X0601	1		0601	중앙관서지출관계좌에 자금계획 배정	최초요청	X0601		1
		재처리요청	X0605					재처리요청	X0605		
0701	지출금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에 이체	최초요청	X0701	1		0701	지출금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에 이체	최초요청	X0701		1
0702	지출금으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자 지급	재처리요청	X0705			0702	지출금으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자 지급	재처리요청	X0705		
0704	예탁금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에 이체					0704	예탁금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에 이체				
0705	국고자금 운용수익으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자 지급					0705	국고자금 운용수익으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자 지급				
0707	금년도 회계계정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상환					0707	금년도 회계계정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상환				
0708	지출금을 한국은행 국제국 앞 이체					0708	지출금을 한국은행 국제국 앞 이체				
0709	지출금으로 한국은행 국제수수료 지급					0709	지출금으로 한국은행 국제수수료 지급				
0710	지출금을 한국은행에 교부					0710	지출금을 한국은행에 교부				
0711	예탁금을 한국은행에 교부					0711	예탁금을 한국은행에 교부				
0712	전년도 회계계정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상환					0712	전년도 회계계정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상환				
0801	수입금 청구정정	최초요청	X0801	1		0801	수입금 청구정정	최초요청	X0801	1	
0802	국제수납정리계정 이체	재처리요청	X0805			0802	국제수납정리계정 이체	재처리요청	X0805		
0803	국제수납정리계정 이체 정정					0803	국제수납정리계정 이체 정정				
0804	국제수납정리계정에서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					0804	국제수납정리계정에서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				
0805	지방소비세계정에서의 이체분 정정					0805	지방소비세계정에서의 이체분 정정				

주 : 1) 1 : 기획재정부(dBrain), 2 : 계좌입금 대상기관, 3 : 금융결제원

주 : 1) 1 : 기획재정부(dBrain), 2 : 계좌입금 대상기관, 3 : 금융결제원

현행					개정안					비고			
업무유형	업무내용	요청구분	전문번호	관련기관 ¹⁾	업무유형	업무내용	요청구분	전문번호	관련기관 ¹⁾				
0901	지출금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금 정리	최초요청	X0901	1	0901	지출금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금 정리	최초요청	X0901	1				
0902	지출금으로 국고채권 상환자금 교부	재처리요청	X0905		0902	지출금으로 국고채권 상환자금 교부	재처리요청	X0905					
0903	지출금으로 외평채 상환자금 교부		0903		지출금으로 외평채 상환자금 교부								
0904	지출금으로 재정증권 상환자금 교부		0904		지출금으로 재정증권 상환자금 교부								
0910	국고자금 운용수익으로 재정증권이자 지급자금 교부		0910		국고자금 운용수익으로 재정증권이자 지급자금 교부								
0911	우체국예탁금으로 선사용자금 반환		0911		우체국예탁금으로 선사용자금 반환								
0912	국고금 운용자금 반환 및 운용수익 상호예탁		0912		국고금 운용자금 반환 및 운용수익 상호예탁								
0913	국고자금 상호예탁		0913		국고자금 상호예탁								
0914	상호예탁 국고자금 반환		0914		상호예탁 국고자금 반환								
0915	재정증권 발행자금 이체		0915		재정증권 발행자금 이체								
0916	금년도 회계계정에서 재정증권 상환자금 교부		0916		금년도 회계계정에서 재정증권 상환자금 교부								
1001	지출금을 우체국예탁금계좌에 이체		최초요청		X1001	1		1001		지출금을 우체국예탁금계좌에 이체	최초요청	X1001	1
1002	국고금 운용자금을 우체국예탁금계좌에 이체		재처리요청		X1005			1002		국고금 운용자금을 우체국예탁금계좌에 이체	재처리요청	X1005	
1003	우체국예탁금계좌로 선사용자금 교부		1003		우체국예탁금계좌로 선사용자금 교부								
1101	지출금 청구정정		최초요청		X1101	1		1101		지출금 청구정정	최초요청	X1101	1
1102	지출반납금 청구정정		재처리요청		X1105			1102		지출반납금 청구정정	재처리요청	X1105	
1201	지출금의 지로대금 이체(지출관의 지로대금 납부)		최초요청	X1201	1,3	1201		지출금의 지로대금 이체(지출관의 지로대금 납부)	최초요청	X1201	1,3		
		재처리요청	X1205				재처리요청	X1205					
1301	수입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최초요청	X1301	1	1301	수입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최초요청	X1301	1				
1302	수입금 월계대사(확인)	재처리요청	X1305		1302	수입금 월계대사(확인)	재처리요청	X1305					
1303	지출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1303	지출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1304	지출금 월계대사(확인)	1304	지출금 월계대사(확인)										
1305	예탁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1305	예탁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1306	예탁금 월계대사(확인)	1306	예탁금 월계대사(확인)										
1401	각 회계계정의 잔액 조회	최초요청	X1401	1	1401	각 회계계정의 잔액 조회	최초요청	X1401	1				
1402	각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조회	재처리요청	X1405		1402	각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조회	재처리요청	X1405					
1403	수입징수관 계좌잔액 조회	1403	수입징수관 계좌잔액 조회										
1404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잔액 조회	1404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잔액 조회										
1405	지출관의 지출누계액 조회	1405	지출관의 지출누계액 조회										
1406	통합계정 소속회계 잔액 조회(당일 AI 처리분 제외)	1406	통합계정 소속회계 잔액 조회(당일 AI 처리분 제외)										
1499	전체 계정잔액 파일(CC전문) 송신	1499	전체 계정잔액 파일(CC전문) 송신										
1501	수입징수관계좌에서 과오납금 반환처리하여 지출관 앞 반납	최초요청	X1501		1	1501	수입징수관계좌에서 과오납금 반환처리하여 지출관 앞 반납	최초요청		X1501			
		재처리요청	X1505				재처리요청	X1505					

주 : 1) 1 : 기획재정부(dBrain), 2 : 계좌입금 대상기관, 3 : 금융결제

주 : 1) 1 : 기획재정부(dBrain), 2 : 계좌입금 대상기관, 3 : 금융결제원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7>					<별표 7>					
국고 송수신 파일					국고 송수신 파일					
1. 한국은행이 송신하는 파일					1. 한국은행이 송신하는 파일					
전문번호	수신기관	업무내용	송수신시간	비고	전문번호	수신기관	업무내용	송수신시간	비고	
TQ00F1	기획재정부	금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금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금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액 보고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금 지급액 보고표 당일 수입금 계좌 잔액 및 누계 당일 수입금 정정내역 당일 지출금 및 특별계정 계좌 잔액 및 누계 금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금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 소속 계정) 금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17:00		TQ00F1	기획재정부	금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금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금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액 보고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금 지급액 보고표 당일 수입금 계좌 잔액 및 누계 당일 수입금 정정내역 당일 지출금 및 특별계정 계좌 잔액 및 누계 금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금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 소속 계정) 금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17:00		
TQ00F2	기획재정부	전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전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전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액 보고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금 지급액 보고표 전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전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 소속 계정) 전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17:00		TQ00F2	기획재정부	전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전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전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액 보고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금 지급액 보고표 전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전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 소속 계정) 전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17:00		
TQ00F3	기획재정부	회계직공무원 계좌정보 변동내역 국고금취급점 변동내역 한국은행 당좌예금 기관코드	09:00		TQ00F3	기획재정부	회계직공무원 계좌정보 변동내역 국고금취급점 변동내역 한국은행 당좌예금 기관코드	09:00		
TQ00F4	금융기관 ¹⁾	계좌정보 신설, 폐지 내역	09:00		TQ00F4	금융기관 ¹⁾	계좌정보 신설, 폐지 내역	09:00		
TQ00F5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과초금 및 우체국자금 거래내역	09:00		TQ00F5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과초금 및 우체국자금 거래내역	09:00		
주 : 1) 우정사업본부 포함					주 : 1) 우정사업본부 포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전문번호	수신기관	업무내용	송수신 시각	비고	전문번호	수신기관	업무내용		송수신 시각
TQ00F6	금융기관 ²⁾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수납내역 중 오류내역 취급점별 자금결제내역	09:00		TQ00F6	금융기관 ²⁾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수납내역 중 오류내역 취급점별 자금결제내역	09:00	
TQ00F8	기획재정부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영수내역	09:00		TQ00F8	기획재정부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영수내역	09:00	
TQ00F9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계좌 현황(신설, 폐지, 현재 계좌수) 국고예금 거래 내역	09:00		TQ00F9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계좌 현황(신설, 폐지, 현재 계좌수) 국고예금 거래 내역	09:00	
TQ00FA	금융기관 ²⁾	국고금 정정분 자금결제 내역 조기결제 및 조기회수 내역	16:00		TQ00FA	금융기관 ²⁾	국고금 정정분 자금결제 내역 조기결제 및 조기회수 내역	16:00	
TQ00FB	금융기관 ¹⁾	국고취급점 신설/변경/폐지 신고(통보) 수신결과 국고취급점 신설/변경/폐지 신고(통보) 처리결과	09:00		TQ00FB	금융기관 ¹⁾	국고취급점 신설/변경/폐지 신고(통보) 수신결과 국고취급점 신설/변경/폐지 신고(통보) 처리결과	09:00	
TQ00G1	기획재정부	월계대사표(확인내역 포함)	09:00		TQ00G1	기획재정부	월계대사표(확인내역 포함)	09:00	
TQ00G2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월계대사 의뢰	09:00		TQ00G2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월계대사 의뢰	09:00	
TQ00G3	국세청	국세환급금(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포함)) 심사결과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회 심사결과	11:00	dBrain경유	TQ00G3	국세청	국세환급금(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포함)) 심사결과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회 심사결과	11:00	dBrain경유
TQ00G4	우정사업본부	국세환급금 지급의뢰(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포함))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회	11:00		TQ00G4	우정사업본부	국세환급금 지급의뢰(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포함))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회	11:00	
TQ00G5	금융기관	국세환급금 지급의뢰(계좌이체)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회	11:00		TQ00G5	금융기관	국세환급금 지급의뢰(계좌이체)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회	11:00	
TQ00G6	국세청	국세환급금 지급 결과(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 국세환급금 계좌확인 결과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및 세입편입 결과	14:00	dBrain경유	TQ00G6	국세청	국세환급금 지급 결과(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 국세환급금 계좌확인 결과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및 세입편입 결과	14:00	dBrain경유
TQ00G7	기획재정부	당행과 dBrain간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30		TQ00G7	기획재정부	당행과 dBrain간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30	
TQ00G8	국세청	국세청 소관 수입금 청구정정 처리 결과	11:00	dBrain경유	TQ00G8	국세청	국세청 소관 수입금 청구정정 처리 결과	11:00	dBrain경유
TQ00G9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이자 수입 내역	09:00		TQ00G9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이자 수입 내역	09:00	
TQ00GA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계좌정보	09:00		TQ00GA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계좌정보	09:00	
TQ00GB	기획재정부	국세수납정리계정 및 지방세분 농특세의 특별회계 이체내역	09:00		TQ00GB	기획재정부	국세수납정리계정 및 지방세분 농특세의 특별회계 이체내역	09:00	
TQ00GC	기획재정부	송신시점의 각 회계계정 잔액	요청시		TQ00GC	기획재정부	송신시점의 각 회계계정 잔액	요청시	
TQ00GD	기획재정부	국세환급금 최초 환급 건수금액 합계	11:00		TQ00GD	기획재정부	국세환급금 최초 환급 건수금액 합계	11:00	
TQ00GE	국세청	국세수납정리계정과 지방소비세계정간 이체내역	09:00	dBrain경유	TQ00GE	국세청	국세수납정리계정과 지방소비세계정간 이체내역	09:00	dBrain경유
		<신 설>			TQ00GF	국세청	장려금 지급의뢰 심사결과	14:00	dBrain경유
		<신 설>			TQ00GG	우정사업본부	장려금 이체의뢰	16:00	
		<신 설>			TQ00GH	금융기관	장려금 이체의뢰	16:00	
		<신 설>			TQ00GI	국세청	장려금 지급결과	15:00	dBrain경유

- 업무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

주 : 1) 우정사업본부 포함
2) 우정사업본부, 국고금납부대행기관 포함

주 : 1) 우정사업본부 포함
2) 우정사업본부, 국고금납부대행기관 포함

현행					개정안					비고
2. 한국은행이 수신하는 파일					2. 한국은행이 수신하는 파일					
전문번호	송신기관	업무내용	송수신 시각	비고	전문번호	송신기관	업무내용	송수신 시각	비고	
TRR0A1	금융기관 ¹⁾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수납내역	08:30		TRR0A1	금융기관 ¹⁾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수납내역	08:30		
TRR0A3	금융기관 ²⁾	국고예금 계좌 신설/폐지 내역	08:30		TRR0A3	금융기관 ²⁾	국고예금 계좌 신설/폐지 내역	08:30		
		국고예금 거래 내역(입출금액, 잔액, 적수/이자 등)					국고예금 거래 내역(입출금액, 잔액, 적수/이자 등)			
TR00A4	국세청	국세환급 의뢰(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 포함))	10:00	dBrain경유	TR00A4	국세청	국세환급 의뢰(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 포함))	10:00	dBrain경유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입금가능여부)확인 의뢰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입금가능여부)확인 의뢰			
TRR0A5	우정사업본부	국세환급금 처리 결과(계좌입금, 현금지급취소)	13:00		TRR0A5	우정사업본부	국세환급금 처리 결과(계좌입금, 현금지급취소)	13:00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확인 결과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확인 결과			
		전영업일자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및 세입편입 결과					전영업일자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및 세입편입 결과			
TRR0A6	금융기관	국세환급금 처리 결과(계좌입금)	13:00		TRR0A6	금융기관	국세환급금 처리 결과(계좌입금)	13:00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확인 결과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확인 결과			
TR00A7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월계대사 확인 결과	16:00		TR00A7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월계대사 확인 결과	16:00		
TRR0A8	금융기관 ³⁾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30		TRR0A8	금융기관 ³⁾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30		
TR00A9	국세청	국세청 소관 수입금 청구정정 의뢰	10:00	dBrain경유	TR00A9	국세청	국세청 소관 수입금 청구정정 의뢰	10:00	dBrain경유	
TR00B1	기획재정부	dBrain과 당행 간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00		TR00B1	기획재정부	dBrain과 당행 간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00		
TRR0B2	금융기관 ²⁾	국고취급점 신설/변경/폐지 신고(통보)	08:30		TRR0B2	금융기관 ²⁾	국고취급점 신설/변경/폐지 신고(통보)	08:30		
		<신설>			TRR0AA	국세청	장려금 지급의뢰	08:30	dBrain경유	- 업무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 〃
		<신설>			TRR0AB	우정사업본부	장려금 이체결과	09:00		
		<신설>			TRR0AC	금융기관	장려금 이체결과	09:00		
주 : 1) 우정사업본부, 국고금납부대행기관 포함 2) 우정사업본부 포함 3)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포함					주 : 1) 우정사업본부, 국고금납부대행기관 포함 2) 우정사업본부 포함 3)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라 한다)과 ○○중앙회(또는 ○○은행)(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당사자가 ○○은행인 경우 '은행'이라 할 수 있다. 이하 같다)간에 년 월 일 체결된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국고수납					한국은행(이하 '한은'이라 한다)과 ○○중앙회(또는 ○○은행)(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당사자가 ○○은행인 경우 '은행'이라 할 수 있다. 이하 같다)간에 년 월 일 체결된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국고수납					- <별지 제2-2호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변경 - 중앙회 등이 은행을 국고금 수납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국고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그 사무를 회원조합(또는 회원금고, 회원은행, ○○은행 등)(이하 '회원사'라 한다)에 재위탁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제3조 (생략)</p> <p>제4조(간판게시) 중앙회는 회원사로 하여금 한국은행 국고금수납점임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고수납금의 계리 및 결제) ① 회원사가 취급한 국고수납금은 국고대리점계정으로 계리한다. ② 한은은 회원사가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중앙회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다만, 중앙회 등에 대해서는 "중앙회는 회원사가 수납한 국고금의 한국은행앞 지급을 보증하며, 한은은 회원사가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중앙회가 지정한 결제대행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로 한다) ③ (생략)</p> <p>제6조~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그 사무를 회원조합(또는 회원금고, 회원은행 등)(이하 '회원사'라 한다)에 재위탁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간판 등 게시) 중앙회는 회원사로 하여금 한국은행 국고금수납점임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고수납금의 계리 및 결제) ① 회원사가 취급한 국고수납금은 회원사에 설치된 국고대리점계정으로 계리한다. ② 한은은 회원사가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한은에 개설된 중앙회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다만, 중앙회 등에 대해서는 "중앙회는 회원사가 수납한 국고금의 한국은행앞 지급을 보증하며, 한은은 회원사가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중앙회가 지정한 결제대행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제11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별지 제2-2호 서식></u>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이하 '한은'이라 한다)과 ○○중앙회(또는 ○○은행)(이하 '중앙회'라 한다)간에 년 월 일 체결된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국고수납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그 사무를 △△은행(이하 '회원사'라 한다)에 재위탁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국고금수납사무 재위탁) 중앙회는 기본계약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고금수납사무를 회원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p> <p>제2조(적용규정) ① 중앙회는 국고금수납사무를 회원사에 재위탁함에 있어 국고관련 법령, 한은이 따로 정한 「국고금 취급규정」 및 「국고금 취급절차」, 기본계약서 및 이 계약서 등의 내용을 준수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사와의 재위탁계약시 회원사로 하여금 제1항의 법령, 규정, 계약서 등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p>	<p>납대리점계약 추가 체결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므로 해당내용 삭제</p> <p>- 디지털 점포(비대면 점포)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정의</p> <p>-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p> <p>- 자구수정</p> <p>- 중앙회 등이 은행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 체결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함(서식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국고금수납점 설치 및 폐지)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와 국고금수납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불입 별지에 기재된 회원을 국고금수납점으로 한다.</p> <p>② 「국고금 취급규정」 및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국고금수납점 신설, 변경, 폐지의 신고수리 및 위탁계약 해지 지시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제1항의 국고금수납점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이 폐지된 경우 회원사가 수납한 국고수납금과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한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p> <p>제4조(간판 등 게시) 중앙회는 회원사로 하여금 한국은행 국고금수납점임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고수납금의 계리 및 결제) ① 회원사가 취급한 국고수납금은 회원사에 설치된 국고대리접계정으로 계리한다.</p> <p>② 한은은 회원사가 취급한 국고수납금을 한은에 개설된 회원사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p> <p>제6조(비용부담)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중앙회 또는 회원사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중앙회 또는 회원사의 부담으로 한다.</p> <p>제7조(취급수수료) 중앙회 또는 회원사는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에 따른 수수료 한은에 청구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손해배상책임) 회원사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한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중앙회와 회원사가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p> <p>제9조(제재) 한은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중앙회 또는 회원사에 위규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회원사에 국고금 조기회수 또는 지연이자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p> <p>제10조(계약의 해지) ① 한은은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회의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② 중앙회가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한은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계약해지는 한은이 중앙회에 해지통보를 하면서 지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제11조(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_____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이 계약이 성립된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u>국고금수납점계약서</u></p> <p>○○중앙회(또는 ○○은행)(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당사자가 ○○은행인 경우 “은행”이라 할 수 있다. 이하 같다)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고사무를 재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제3조 (생략)</p> <p>제4조(간판게시) 중앙회는 회원사로 하여금 한국은행 국고금수납점임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수납한 국고금의 회계처리 및 결제) ① 회원사는 수납한 국고금을 <u>국고대리결제</u>점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생략)</p> <p>제6조~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년 _____월 _____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은) 한국은행총재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회) 중앙회장(또는 은행장) _____ (인)</p> <p><u><별지 제4-1호 서식></u></p> <p style="text-align: center;"><u>국고금수납점계약서</u></p> <p>○○중앙회(또는 ○○은행)(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고사무를 재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간판 등 게시) 중앙회는 회원사로 하여금 한국은행 국고금수납점임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수납한 국고금의 회계처리 및 결제) ① 회원사는 수납한 국고금을 <u>회원에 설치된 국고대리결제</u>점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제11조 (현행과 같음)</p> <p><u><별지 제4-2호 서식></u>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u>국고금수납점계약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4-2호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별지 제4호 서식>은 <별지 제4-1호 서식>으로 변경 - 계약당사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국고금수납점계약 체결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하므로 해당내용 삭제 - 디지털 점포(비대면 점포)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정의 -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 - 중앙회 등과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계약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함(서식 추가)

현 행	개정 안	비 고
	<p>○<u>중양회(또는 ○<u>은행)</u>(이하 “중양회”라 한다. 계약당사자가 ○<u>은행인</u> 경우 “은행”이라 할 수 있다. 이하 같다)와 △△<u>은행</u>(이하 “회원사”라 한다)은 중양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고사무를 재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u></p> <p>제1조(적용규정) 회원사는 중양회로부터 위탁받은 국고사무를 처리할 때 국고 관련 법령, 「국고금 취급규정」, 「국고금 취급절차」, 중양회와 한국은행 간 체결한 국고 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및 이 계약서 등의 내용을 준수한다.</p> <p>제2조(국고금수납점 설치 및 폐지) ① 중양회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별지에 기재된 회원사의 영업점을 한국은행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한다. ② 회원사는 국고금수납점을 추가지정·폐지하거나 명칭·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중양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양회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승인한다.</p> <p>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중양회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고금 수납사무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회원사에 재위탁한다.</p> <p>제4조(간판 등 게시) 회원사는 한국은행 국고금수납점임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제5조(수납한 국고금의 회계처리 및 결제) ① 회원사는 수납한 국고금을 회원사에 설치된 국고대리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한국은행은 회원사가 수납한 국고금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회원사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③ 회원사는 국고금 수납자금의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이제 준하는 충분한 조치를 회원사의 본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회원사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인 경우에 적용한다)</p> <p>제6조(비용부담)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원사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회원사의 부담으로 한다.</p> <p>제7조(수수료) 회원사는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중양회에 청구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자료제출) 중양회 또는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회원사에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p>	

현 행	개정 안	비 고
<p><별지 제7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 국고금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서 (☎ -) </p> <p style="text-align: right;"> 처리기한 5일 </p>	<p>으며, 회원사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p>제9조(손해배상책임) 회원사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10조(제재) 한국은행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중앙회 또는 회원사에 위규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회원사에 국고금 조기회수 또는 지연이자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p> <p>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국고금 취급규정」 및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이 중앙회에 대한 사무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회원사의 국고금수납점 전부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다.</p> <p>② 중앙회는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사의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③ 회원사가 해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중앙회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의 계약해지는 중앙회가 회원사에 해지통보를 하면서 지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수납점이 폐지된 경우 회원사는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계약에 의해 처리한 위탁사무 결과를 인계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 수납자금을 결제하여야 한다.</p> <p>제12조(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이 계약이 성립된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년 _____월 _____일</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회) _____ 중앙회장(또는 은행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회원사) _____ 장 (인)</p> <p><별지 제7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 국고금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서 (☎ -) </p> <p style="text-align: right;"> 처리기한 5일 </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문서번호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기관장 (인)</p> <p>「국고금 취급절차」 제4조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금수납점 지정을 신청합니다.</p> <p>1. 신청 금융기관</p> <p>가. 기관명 : (지로코드:) 나. 소재지 : 다. 자본 및 종업원수 : 총자산 - 억원 자기자본 - 억원 상시종업원 : 명 라. 설립일 : 마. 주요업무 : 바. 지역별 영업점 현황 : 사. 기타 참고사항(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에 관한 사항 등)</p> <p>2. 국고금수납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금융기관</p> <p>가. 기관명 : 나. 소재지 :</p> <p>3. 계약체결 희망일 :</p> <p><별지 제47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금 총괄대차대조표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은행</p>	<p>문서번호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기관장 (인)</p> <p>「국고금 취급절차」 제4조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금수납점 지정을 신청합니다.</p> <p>1. 신청 금융기관</p> <p>가. 기관명 : (지로코드:) 나. 소재지 : 다. 자본 및 종업원수 : 총자산 - 억원 자기자본 - 억원 상시종업원 : 명 라. 설립일 : 마. 주요업무 : 바. 지역별 영업점 현황 : 사. 기타 참고사항(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에 관한 사항 등)</p> <p>2. 국고금수납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금융기관</p> <p>가. 기관명 : 나. 소재지 :</p> <p>3. 계약체결 희망일 :</p> <p>붙 임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p> <p><별지 제47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금 총괄대차대조표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은행</p>	<p>- 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명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계 정 과 목	전일잔액	차 변	대 변	차변누계	대변누계	금일잔액	계 정 과 목	전일잔액	차 변	대 변	차변누계	대변누계	금일잔액	
I. 각 회계계정							I. 각 회계계정							
1. 통합계정							1. 통합계정							
2. 특별회계							2. 특별회계							
3. 기 금							3. 기 금							
4. 특별계정							4. 특별계정							
II. 당좌예금계정 (대 체)							II. 당좌예금계정 (대 체)							
III. 합 계							III. 합 계							
<p>주 : 1. I. 각 회계계정의 잔액은 대변잔액이며 II. 당좌예금계정 및 (대체)의 잔액은 차변잔액임</p> <p>2. 각 계수는 환급금과 정정액을 차감한 것이며, 제2란의 “—” 표시금액은 반납금액임</p> <p>3. 기금과 특별계정의 제3란은 연도이월 계산의 금액임</p> <p>4. II.당좌예금계정 및 (대체)의 차변에는 반납금액이 포함되었음</p> <p>5. (대체)에는 계산의 금액이 포함되었으며, I.각 회계계정 계수 중 당좌예금계정 수급이 수반되지 않은 계수를 표시</p> <p>6. I. 각 회계계정 및 차대변누계액에는 계산의 금액이 포함되었음</p>							<p>주 : 1. I. 각 회계계정의 잔액은 대변잔액이며 II. 당좌예금계정 및 (대체)의 잔액은 차변잔액임</p> <p>2. 각 계수는 환급금과 정정액을 차감한 것이며, 제2란의 “—” 표시금액은 반납금액임</p> <p>3. 특별계정의 제3란은 연도이월 계산의 금액임</p> <p>4. II.당좌예금계정 및 (대체)의 차변에는 반납금액이 포함되었음</p> <p>5. (대체)에는 계산의 금액이 포함되었으며, I.각 회계계정 계수 중 당좌예금계정 수급이 수반되지 않은 계수를 표시</p> <p>6. I. 각 회계계정 및 차대변누계액에는 계산의 금액이 포함되었음</p>							<p>- 자구수정(기금은 해당되지 않음)</p>
<p><별지 제48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금 대차대조표(각 회계계정명세)</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은행</p>							<p><별지 제48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금 대차대조표(각 회계계정명세)</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은행</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계 정 과 목	차 변		대 변		잔 액	계 정 과 목	차 변		대 변		잔 액	- 기변경사항 반영	
	세출외	세 출	세 입	세입외			세출외	세 출	세 입	세입외			
합 계					합 계								
주 : 1. 잔액은 대변잔액임 2. <u>합계</u> 이외의 제2란 “-” 표시금액은 반납금, 환급금, 정정액 등의 금액을 합한 것임 3. <u>기금</u> 의 세입·세출간은 전용, 잉여금 등 통상의 수급액이며, 각각 세입외, 세출외란에 포함되어 있음. 4. <u>특별계정</u> 의 세입·세출간은 연도이월 계산의 금액임 5. <u>합계</u> 의 세입·세출간에는 각각 <u>기금</u> 의 해당란 금액이 제외되어 있으며, <u>합계</u> 의 제2란 “-” 표시금액은 반납금임						주 : 1. 잔액은 대변잔액임 2. <u>합계</u> 이외의 제2란 “-” 표시금액은 반납금, 환급금, 정정액 등의 금액을 합한 것임(일반·특별회계 세입외와 기금·특별계정Ⅱ 세입외의 경우 미회수 국고금 차감금액이 포함되었음) 3. <u>기금</u> , <u>특별계정Ⅱ</u> 의 세입·세출간은 전용, 잉여금 등 통상의 수급액이며, 각각 세입외, 세출외란에 포함되어 있음 4. <u>특별계정Ⅰ</u> 의 세입·세출간은 연도이월 계산의 금액임 5. <u>합계</u> 의 세입·세출간에는 각각 <u>기금</u> , <u>특별계정Ⅱ</u> 의 해당란 금액이 제외되어 있으며, <u>합계</u> 의 제2란 “-” 표시금액은 반납금임							
국고금 대차대조표(누계분)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한국은행</div>						국고금 대차대조표(누계분)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한국은행</div>							
계 정 과 목	차 변		대 변		잔 액	계 정 과 목	차 변		대 변		잔 액		- 기변경사항 반영
	세출외	세 출	세 입	세입외			세출외	세 출	세 입	세입외			
합 계					합 계								
주 : 1. 잔액은 대변잔액임 2. 각 계수의 제2란 “-” 표시금액은 반납금임 3. <u>기금</u> 의 세입, 세출란은 전용, 잉여금 등 통상의 수급액이며, 각각 세입외, 세출외란에 포함되어 있음 4. <u>합계</u> 의 세입, 세출란에는 각각 <u>기금</u> 의 해당란 금액이 제외되어 있음						주 : 1. 잔액은 대변잔액임 2. 각 계수의 제2란 “-” 표시금액은 반납금임 3. <u>기금</u> , <u>특별계정Ⅱ</u> 의 세입, 세출란은 전용, 잉여금 등 통상의 수급액이며, 각각 세입외, 세출외란에 포함되어 있음 4. <u>특별계정Ⅰ</u> 의 세입외 세출외 금액에는 연도이월 계산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5. <u>합계</u> 의 세입, 세출란에는 각각 <u>기금</u> , <u>특별계정Ⅱ</u> 의 해당란 금액이 제외되어 있음							